

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3월 2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버스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및 공개에 관하여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버스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삭제(안 제26조제3항)
- 나.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및 공개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」를 따름(안 제26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결정권”을 “표결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31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및 공개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37조 중 “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”를 “시행규칙 별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회의) ①·② (생략)	제26조(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결정권을 가진다.	③ ----- 표결권-----.
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④ 제31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및 공개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」를 따른다.
제37조(보유차고 면적기준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37조(보유차고 면적기준) 시행규칙 별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